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2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4. 11.

다. 상정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4.2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채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를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포구민이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O 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의 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O 입법예고: 2025. 3. 31. ~ 4. 7. 결과: 의견 없음

O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를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포구민이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표현 정비

- 제16조의2 제목을 기존의 "(자원봉사자증 발급 등)"에서 "(자원봉사자의 우대 등)"으로 변경하여 자원봉사자의 우대 조치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
- 제1항 중 "등록된"을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

나. 제4항 및 제5항 신설

- 제4항: 자원봉사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우 대 지원을 명시
 - 1. 연간 300시간 이상 활동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2. 누적 10,000시간 이상 활동자 → 간병비 지원
 - ※ 단,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불가
- 제5항: 위 우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위임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개정 내용 검토

O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등록현황

자원봉사자 활동 및 등록 현황(2023. 12. 31.)

하도 어이의	실인원(명)	등록봉사자(명)			
활동 연인원	(중복제외, 1회이상 봉사자)	계	남	여	
114,461	13,891	100,666	38,343	62,323	

연령별 연인원 현황

구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명)	100,66 6	11,578	35.882	17,315	12,695	13,400	5,521	4,275
비율	100%	11.5%	35.7%	17.2%	12.7%	13.3%	5.4%	4.2%

O 마포구 동 자원봉사캠프 현황

-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자원봉 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
- 16개소, 소속 활동가 218명
- 현안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구분	효도밥상 자원봉사	V-프로젝트 공모사업	우리마을 골목여행 프로젝트	집밥 프로젝트
대상	16개동 지원봉사캠 프	16개 동 지원봉사 캠프	8개 동 지원봉사 캠프	16개 동 지원봉사 캠프 및 저소득층
내용	배식,질서유지, 식자 재 전차리 등		골목여행 코스 개발 및 운영 (골목탐방 및 플로깅)	

- 마포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 현황
 -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운영

구			분	내 용
사	업	근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
사	업	대	상	전년도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마포구 자원봉사자
사	업	내	ൾ	- 구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20% 감면 -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20% 감면 - 구립체육시설 수강료 등 20% 감면 -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등 20%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④ 타 자치구 조례 현황

○ 간병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원 서비스를 조례에 명시한 자치단체

간병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원 서비스 포함 조례

연번	조 례	조문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긴병서비스 지원
2	경주시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3	계룡시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4	고성군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간병지원을 위한 찾아 쓸 수 있는 지원 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5	공주시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총 1,000시간 이상의 지원봉사활동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누적 3,0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자원봉 사자 및 직계가족 간병서비스 이용시 1 인 1회 최대50만원(1일 10만원 이내)
7	광주광역시 남구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 례	누적3,500시간 및 남구 봉사활동 50건 이상/ 본인만/ 간병서비스 이용시 1인 1 회 최대50만원(1일 10만원 이내)
8	금산군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누적 1,000시간 이상
9	김해시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간병비 등 지원
10	단양군 지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간병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봉사 마일리 지제 운영
11	당진시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수 지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13	신청군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간 최대 120시간 이내에서 지원 가능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기본 급여비용)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실적 우수한 사람 간병서비스 지원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누적 5,000시간 이상 간병서비스 지원
1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수 지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17	진천군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수 지원봉사활동 지간병서비스
18	평택시 지원봉사활동지원 조례	3,0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간병서비스 지원
19	홍성군 지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우수지원봉사자 본인 간병서비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2023년 기준 서 울시 25개 자치구 중 11위 (인구대비 등록률 27.68%) 이나, 등록률이 낮은 동작구(23.31%), 강북구(21.90%)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볼 때 행정적 실효성과 자치법적 정합성을 모두 고려한 자원봉사 자 우대에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 O 특히, 본 조례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작년 기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준	인원수	혜택 대상자
연간 300시간 이상 활동자	168	98
누적 10,000시간 이상 활동자	33	33명 중 신청자

봉사자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40~50대 인점을 볼 때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적 우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조례 운영에 있어 형평 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추후 시행 규칙 제정 시에는 지원대상 산정기준의 명확화, 중복지원 여부 판단기준, 예산 확보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u>원안가결</u>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